

제1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09. 3. 24.(화), 11:00

2. 장 소 :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무선설비규칙」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2009-12-043)

- 박윤현 주파수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코닉시스템(주)에 대한 위성휴대통신용 주파수할당을 의결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단말기의 기술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무선설비규칙」 고시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내용

- 가. ITU에서 권고한 위성휴대통신용 단말기의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개정
- 나. 해당 무선설비의 통신방식과 전파형식을 규정하고, 유해한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허용편차, 불요발사의 제한값 등을 규정

2) 방송광고 편성법규 위반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2009-12-044~046)

- 김준상 방송운영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의 의한 방송광고편성 허용범위를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10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원안대로 의결함.

※ 과태료 부과내역

법인명	채널명	위반내용	과태료
브이씨엠미디어(주)	시네마TV	시간당 광고시간 초과	3,000만원
(주)디원티브이	D-ONE	시간당 광고시간 초과	2,000만원
(주)씨엠씨가족오락티브이	CMC가족오락TV	시간당 광고시간 초과	500만원

3) 방송소외계층지원 종합계획에 관한 건(2009-12-047)

-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청각 장애인 등의 방송접근권 향상, 소외계층의 디지털전환 지원 및 미디어교육 강화 등 방송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추진내용

- 가.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확대 추진 등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강화
- 나. 방송 소외계층 디지털전환 점검 등 방송소외계층 디지털전환 지원 강화
- 다. 방송 소외계층의 적극적인 방송참여 유도 등 소외계층 방송콘텐츠 접근기회 확대
- 라. 새터민 미디어교육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 사회적 통합을 위한 미디어교육 강화
- 마. 소요예산('09~'12년까지 총 435억원 예상) (단위: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1. 방송수신기보급	2,420	5,445	5,445	5,445	18,755
2. 방송제작물 지원	3,768	4,808	5,172	5,567	19,315
3. 미디어교육 교재 및 아카이브 지원	535	583	636	694	2,448
4. 미디어교육지원	165	578	292	309	1,344
5. 소외계층 연구조사	200	200	200	200	800
6. 소외계층 지원 행사	200	200	200	200	800
총 계	7,288	11,814	11,945	12,415	43,462

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 개정에 관한 건(2009-12-048)

-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하여 공표요건은 제한하되,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공표지침 [훈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개정 주요내용

- 가. 공표제도의 취지 및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공표명령을 제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공표요건 규정 신설(안 제3조)
- 나. 신문공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최근 1년간 해당사업자의 광고횟수 또는 광고비지출이 가장 많은 신문에 공표하도록 선정기준을 객관화(안 제5조)
- 다. 인터넷을 매개로 금지행위 발생시 또는 인터넷 공표가 효과적인 경우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규정 신설 및 현행 인터넷 공표기간 단축(안 제17조)
- 라. 손해배상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개개인에게 우편으로 알리는 경우에 대한 요건을 신설(안 제20조)
- 마. 기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사. 보고사항

1)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 최재유 국제협력관으로부터 남북간 방송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규칙 제정(안)을 보고받고, 일정대로 추진하되 동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함.

※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안)

- 교류추진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교류추진위원회위원 및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안 제2조 및 제3조)
- 교류추진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안 제4조 및 제5조)
-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 남북 공동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안 제7조)
- 교류추진위원회 회의는 교류추진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안 제8조)
- 교류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청취 가능(안 제9조)

나. 교류추진위원 위원 위촉 추진

- 교류추진위원은 행정부 3인, 방송업계 6인, 관련전문가 5인으로 구성

2) 「'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입법계획」에 관한 사항

- 이재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소관 법령의 입법(제정·개정·폐지)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초 법제처에 당해연도 입법계획을 제출해야 함에 따라 방송법 등 5개 주요법안의 '09년도 주요 입법방향을 보고받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과 함께 제·개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함.

※ '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입법계획(안)

법안명	주요 입법 방향	제출일
방송법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산재되어 있는 유료방송 의무편성채널 규정을 통합하고, 플랫폼사업자의 편성권과 신규 PP의 송출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무편성 채널 규정 검토 ○ 이용자선택형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승인'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신고'로 전환 ○ 방송발전기금 재원의 하나로, 방송사업 최초 허가·승인시 사업자가 약정한 만큼 부과해오던 '방송사업자 출연금'의 근거 마련 ○ '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 규정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사용채널'을 정의하고, 채널 운용범위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금지행위 규정 도입 ○ '위성 DMB'의 의무재송신 규정 보완 등 	법제처: 9월 국회: 12월
방송법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포함시켜 방송사업자와 제작사간 분쟁까지 포함 ○ 지역 민방의 '자체편성 비율' 규제의 법안 문구정리 	법제처: 6월 국회: 8월
IPTV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IPTV 콘텐츠사업자'인 경우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49%) 대상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제외 ○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관련 분쟁 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준용 등 	법제처: 7월 국회: 9월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B 방송보조국 '허가'를 '신고'로 전환 ○ 특별재난지역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근거 마련 등 	법제처: 6월 국회: 8월
정보통신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간 양도·양수절차 완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 양도·양수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나 일부 적용 곤란 조항 조정 	법제처: 8월 국회: 10월
인터넷주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법에서 위임받아 제정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상향입법 	법제처: 6월 국회: 8월

아. 기타

1)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3월 27일(금)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12:05)